LPG특정사용시설 시공표지판 의무화 반영

- 가스기준위, 시공표지판 크기 10×6cm 이상 -

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월 19일 제72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통해 KGS AC111 · 2, FU431~3 등 17종에 대한 상세기준을 심의 · 의결했다.

앞으로 제1종 보호시설이나 지하실에서 LPG를 사용하는 경우 시공자는 반드시 시공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,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해진 만큼 이에 따른 설치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다.

□ KGS AC111 · 2 등 8종

- 미국기계학회(ASME) 규격재료의 허용응력값이 SI단위로 표기돼 이를 수정
- 기화장치 부속품 설치에 대한 기준해석도 오류방지를 위해 명확히 함

□ FP331~4

O 태양광발전설비의 LPG충전시설 내 설치 관련, 안전거리와 설치기준 반영

□ FU331

○ 집단공급시설의 안전성확인 대상 배관길이를 도시가스공급시설 시공감리 기준을 적용해 검사대상배관 길이의 30% 이상 실시토록 명시

□ FU431

○ 공급자가 선정되지 않은 시설의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공급자 선정 시까지 공급시설의 유지·관리 주체를 시공자로 명시

□ FU431~3

- 시공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시공표지판을 부착토록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 됨에 따라 이를 코드에 반영
 - 설치대상은 1종 보호시설이나 지하실에서 LPG를 사용하는 경우(주거용 제외),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 급식소, 저장능력 250kg 이상 공동주택임. 저장설비의 위치 변경 또는 설치 규모가 늘어나는 경우, 소 형저장탱크를 교체 설치하는 경우도 시공표지판 작성 의무화
 - 시공표지판은 가로 10cm, 세로 6cm 이상. 시공자 명칭, 연락처, 공사명, 시공연월일 등을 표시해야 함 ◆